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나7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나71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가소84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20. 2. 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가소84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동생인 D와 함께 인천 중구 E 소재 F수족관(이하 ‘이 사건 수족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0월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수족관의 공장을 원고에게 줄 테니
D와 같이 위 공장을 운영해 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월경 피고와 위 공장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 내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지 않는 등 위 계약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전대차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족관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위

공장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였고 종전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수족관의 영업권 및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인수확인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제1심 증인 D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족관의 공장 및 기계를 쓰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 수족관을 만들고 팔아서 재료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반반 나눴다, 2,000만 원은 공장사용료이다, 공장 월세는 55만 원으로 원고와 자신이 반반씩 내기로 했고, 전기세 · 수도세는 피고가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족관의 공장을 전대차 형식으로 빌린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굳이 위 공장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경비용역비를 계속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서인덕, 판사 이재환